

## 이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(안)

### 1. 主要 法的根據

#### ○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(건강생활실천협의회)

- 제1항 : 시 · 도지사 및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·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- 제2항 :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2. 提案理由 및 檢討意見

- .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건강 증진법이 법률 제4,914(195. 1. 5)호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시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 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주민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 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, 조례안 제9조의 수당 등에 대하여 협의회 위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 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됨.